

# Deloitte Insights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 K뷰티 산업과 지속가능경영

Assurance-ESG

Sep 2024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 Content

Vol.1

## Cosmetic Industry Insight Report 2024

지속가능성은 현대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뷰티 제품은 단순히 미와 아름다움의 표현을 넘어, 소비자 들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위해 선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 Content

**Chapter1.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 ‘ESG’**

**Chapter 2. ESG 규제 도입 동향 (EU편)**

**Chapter 3. 화장품 기업의 대응 방향**

# Chapter 1.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 'ESG'





##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 'ESG'

1992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채택

1997 교토의정서 채택

2005 UN PRI 출범

2015 파리협정 채택

2019 EU 2050 탄소중립 선언  
EU Taxonomy 제정

2020 한국정부 탄소중립 선언

2021 미국 파리 기후 협약 복귀

2022 EU 공급망 실사 지침 채택

2023 지속가능공시 기준 ISSB 발표  
EU CSRD 적용 시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후부터이다. 2005년에는 유엔의 책임 있는 투자 원칙(UN PRI)이 설립되어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15년 파리 협정을 중심으로 RE100, Net-Zero 선언, TCFD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니셔티브와 가이드라인들이 등장하게 되며, EU 및 미국 산업계에서 ESG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주목되었다.

특히 뷰티 산업의 특성상, 소비자는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선호한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소비 트렌드가 부상하여 제품 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구매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장품 산업계는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다. 이에 소비자의 가치 소비 확산은 지속가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략적인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이행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직결되고 있다.

### 화장품 소비자의 가치소비 트렌드 설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100% 자연 성분 유래	46	36	55	62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	23	36	29	24
동물실험X	45	50	45	22
친환경적 제조방식	31	30	36	45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브랜드	26	50	21	15

“  
화장품 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100% 지속가능해질 수는 없다.  
점진적이거나, 완전한 지속가능성을 달성해야 한다.”



ESTÉE  
LAUDER  
COMPANIES

**NANCY MAHO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 ‘ESG’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정부, 투자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

**첫째,**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며 있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활동에 소홀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대응은 기업의 경영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화장품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경영은 더 이상 선택(Option)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필수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화장품 산업 특성상 소비자로 기인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단순 재무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친환경 제품생산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동자 권리보호, 공정 거래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을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기업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이 강조되면서 지배구조(Governance)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부패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수립을 통해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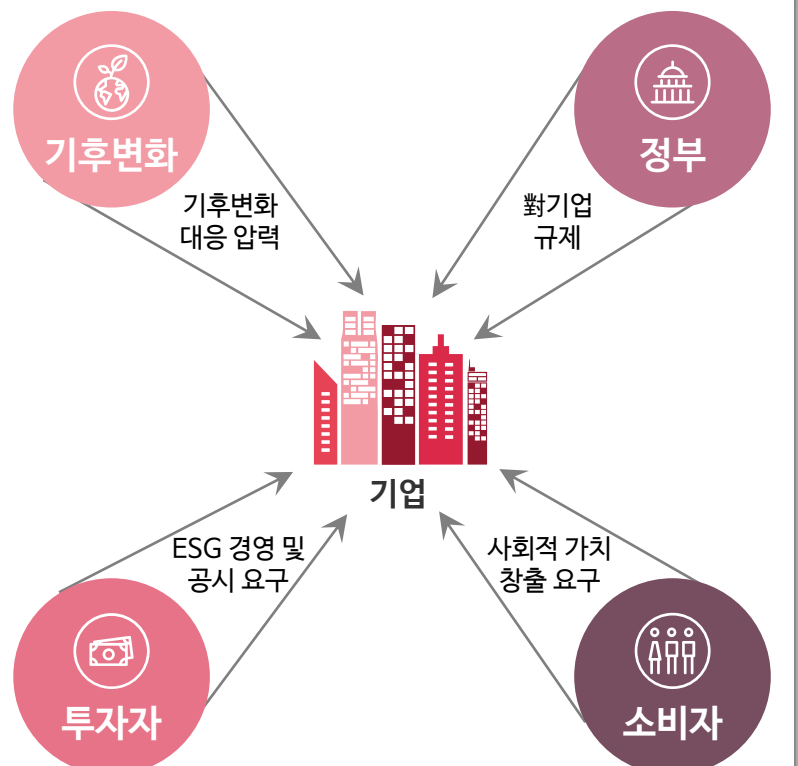
ESG 경영 패러다임의 확산은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그리고 국가별 정부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현대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적 및 환경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는 더욱 긴박하게 행동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경영을 준비해야 한다”



L'ORÉAL

**Marissa Pagnani McGowa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L'OREAL USA



# Chapter 2.

## ESG 규제 도입 동향 (EU 편)

- 지속가능경영 공시
-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 자원순환
- 그린워싱



## ESG 규제 도입 동향

### “지속가능성 규제, 결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기업의 ESG,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성과 공시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규제 도입에 핵심이다. 2024년 기업의 관심은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으며 이는 상당한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단순히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업과 운영 모델에 미치는 규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으로부터 파생되는 기회와 그 접근법의 장기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전사적으로 이해시키고 도입하는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 특히, 주요 수출산업인 화장품 산업은 신사업 기회 창출 및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가 또는 수출 유망국가의 ESG 규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SG관련 규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공시,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세, EU에코디자인 규정, 자원순환 정책 도입을 통해 EU역내 수출 기업 및 역내 경영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탄소관세, 기후공시 의무화, 청정경쟁법(CCA) 등과 같이 현재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ESG에 대한 양극단의 정치 이념에도 불구하고 ESG 관련 규제에는 적극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EU와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들의 규제가 국제적인 표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ESG 규제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기업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지 못할 시, 주요 시장에서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거나 규제 준수를 조건으로 한 무역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의 ESG 규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ESG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다.

이번호 Chapter 2에서는 EU 및 유럽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을 넘어,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을 위해 주목해야 할 주제, 순환성, 지속가능한 공급망, 그린워싱 (Greenwashing) 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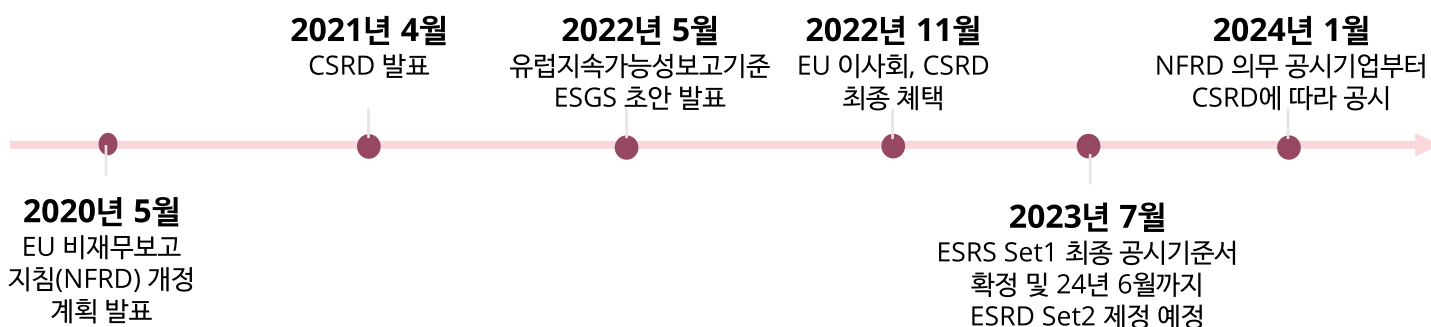
##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기후 위기에 대한 EU의 대응은 지속가능성 공시 개선과 EU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 (이하 CSRD)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충족하려면 갈 길이 멀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EU 친환경 전략의 핵심이다. 화장품 산업뿐 아닌 국내 산업계 중 EU 수출기업들은 CSRD 공시 요건 준수를 위한 선제적 마련이 필요하다.



CSRD는 NFRD(비재무보고 지침)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EU는 2014년 10월에 이미 NFRD를 법제화함으로써, EU 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NFRD에 따른 공시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비재무라는 명칭 때문에 ESG 요소가 기업의 재무성과 관련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ESG 정책과 연계성 보안을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 비교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CSRD로 개정하였다.

### CSRD 동향



### CSRD 공시특징

#### 규제 대상 범위 확장

- 기존 NSRD에 적용되는 규제 대상을 EU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Non-EU 기업까지 적용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감사 요구

- 기업이 보고한 지속가능 관련 정보에 대한 감사 인증 요구

#### 지속가능성 정보 관련 요구사항 강화

- 이중 중대성 접근법에 따라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 모두 보고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디지털화

- 기업이 보고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분류함으로써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정보를 EU의 단일 기업정보 플랫폼인 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에 공급 요구



##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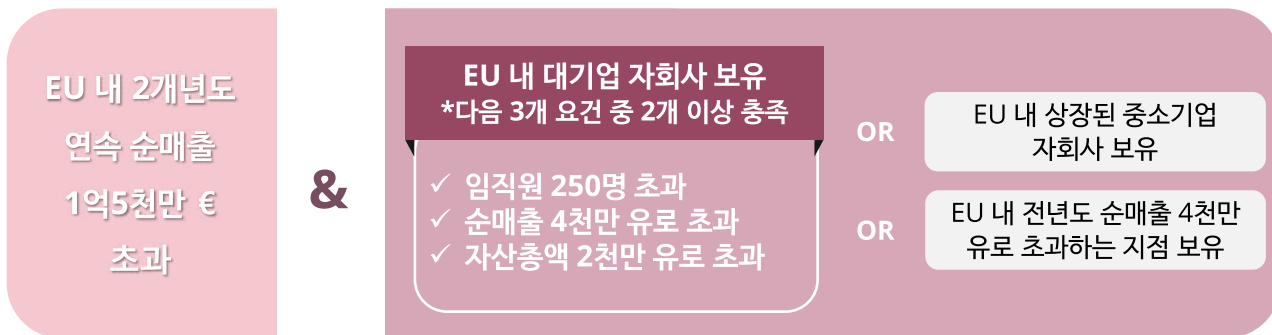
CSRD를 기반으로 기업은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제고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CSRD에 따라 약 5만개의 기업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CSRD의 시작인 NFRD 보고기업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시작된다. EU 집행위는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 제한적 인증에서 합리적 인증으로의 전환을 평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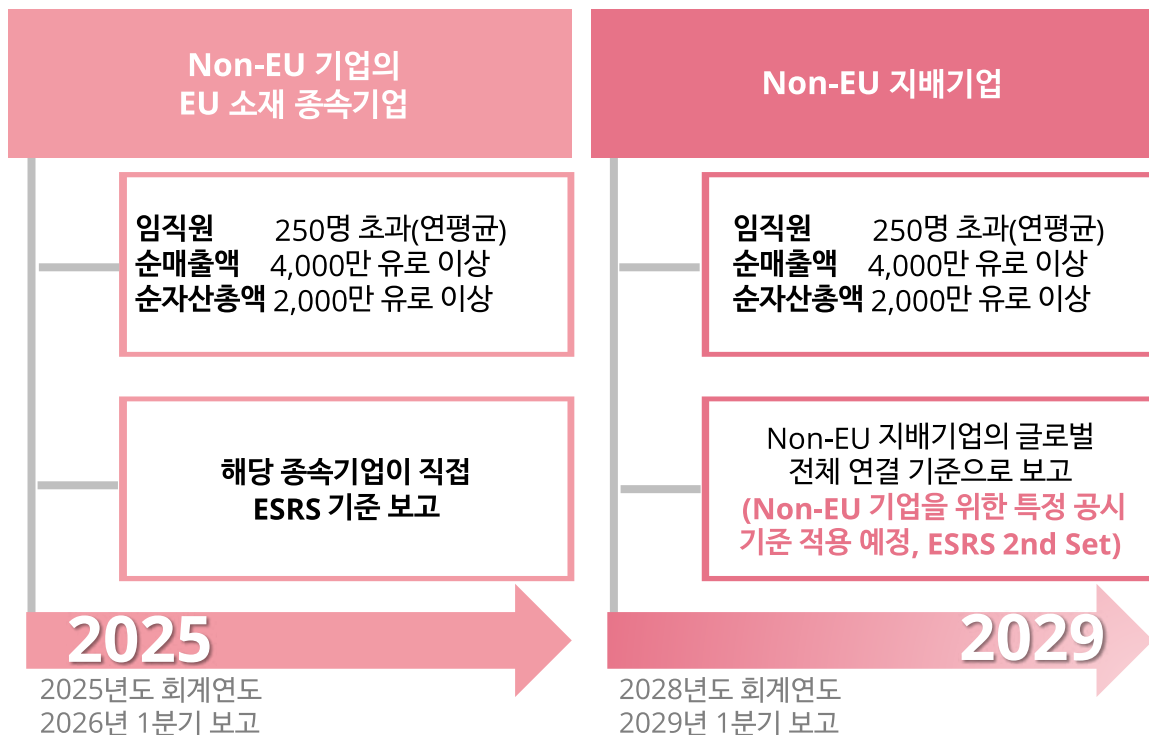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성은 바로 CSRD는 역외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U 역외 국가인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EU 내 CSRD 적용조건에 포함되는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시, 해당 종속법인이 위치한 국가에서 공시요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 본사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기업은 본사 뿐만 아니라 보유한 종속회사별 이익 및 임직원수의 명확한 파악을 통해, 의무화에 포함된 기업들과 적용 시점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 국내기업 (Non-EU 모회사 적용 대상)



### 국내기업 CSRD 공시일정 및 공시 주체/범위



#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2023년 1월부터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18개월 내 CSRD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단, 국내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국 실정을 반영하여 법적 요건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 9월까지 EU회원국 중 15개 국가가 입법 승인을 통한 국내법전환을 완료하고 본격 이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은 법인이 위치한 국가별 법제화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리스크가 아닌 기회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 EU 회원국별 CSRD 국내법 전환 동향

국가	법제화 진행 단계		
	검토 중	입법 추진	입법 승인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 CSRD 국내법 전환 완료



크로아티아

- '24년 7월, CSRD 시행을 위한 '현지법률 발효
- CSRD 시행을 위한 자국 내 회계법, 감사법, 자본시장법 개정
- EU CSRD 법안을 준수하나 보고 범위 확대, 크로아티아어로의 번역 요구 등의 규정 추가



체코

- '24년 1월 국내법 전환 발표 ('25년 시행)
- 위반 시 전체 자산 3%~6% (국세청에서 집행)



덴마크

- '24년 5월 국내법 전환 발표
- 자국내 영리재단, 유한책임협동조합까지 포함하여 보고대상 확장



핀란드

- '23년 1월 국내법 제정 완료
- 대형 협동조합, 연금제공자를 포함하여 보고대상 확장
- EU CSRD 대비 지속가능성 보고서, 재무제표 발행기간 6개월 단축



프랑스

- '23년 12월 6일 국내법 전환 발표 ('25년 시행)
-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75,000 벌금 부과
- 직원 250명이상, 총자산 2,000만유로 초과,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대상까지 확장
- CSRD에 포함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관련 제한적 정보 또한 경영 보고서에 포함 의무화



헝가리

- '23년 12월 국내법 'the ESG Act' 전환 발표 (단계적으로 2025년 시행)
- 위반 시 연간 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루마니아

- '24년 6월 국내법 전환
- 대기업 분류조건을 총자산 350만유로 초과, 순매출액 700만 유로 초과, 직원수 50명 초과로 정의하여 보고대상 대폭 확대



스웨덴

- '24년 7월 국내법 전환 발표 ('25년 시행)
- 지속가능성 보고서 감사원 승인 필요
- 위반 시 €5,000~ €1,000,000 벌금 부과



불가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7개국은 EU CSRD와 동일하게 국내법 전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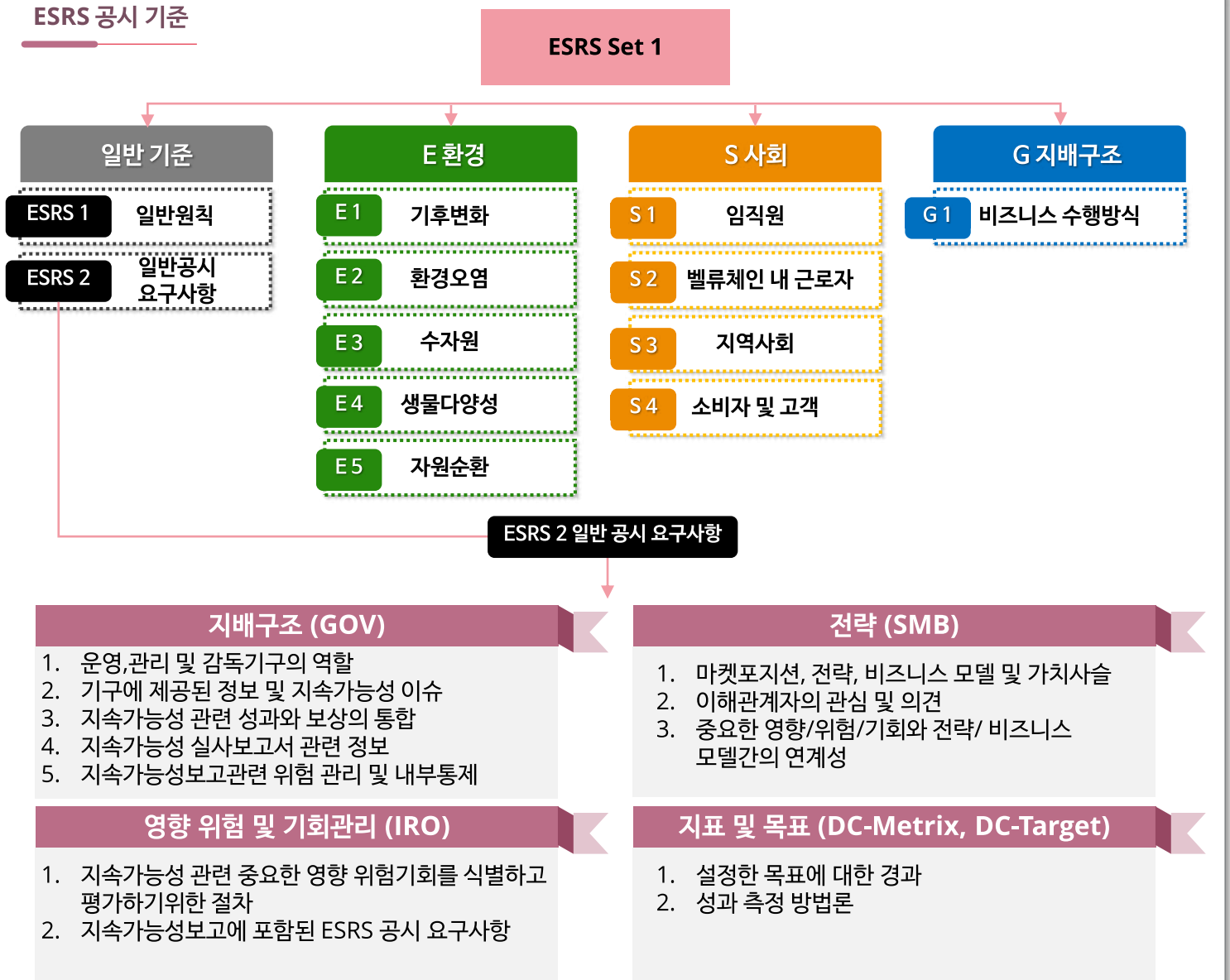
##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는 CSRD를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고지침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 표준(ESRS)을 개발하였다. ESRS는 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CSRD 공시를 이행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Set 1과 산업별, 2023년 7월 말, Set 1의 기준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일반기준과 환경(5개), 사회(4개), 거버넌스(1개) 공시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CSRD 공시를 위해 ESRS1에서 정의하는 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후, 평가 결과 도출된 기업의 중대이슈별 매칭이 되는 중대 토픽에 대해 ESRS2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 요구사항 (지배구조, 영향 위험 및 기회관리, 전략, 지표 및 목표)을 보고해야 한다.

ESRS 2의 공시요구사항은 TCFD 4 Pillar(지배구조, 위험관리, 전략, 지표 및 목표)와 유사하나 기후에 국한하지 않고 E,S,G 각 항목별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 이에, ISSB는 발표한 S1(일반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중 기후를 제외한 다른 중대이슈 공시를 위해 ESRS를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ESRS Set 1에 대한 이해 및 선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현재 시점의 기업들에게 지속가능경영 공시 준비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EU 역외 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이 공시 해야 할 세분화된 기준인 Set 2는 2026년 이후 공개될 예정

### ESRS 공시 기준



##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EU 집행위원회는 ESRS 보고기준을 확정하되,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업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유예 시기를 제정했다. 비재무 관련 항목인 E,S,G 항목 중 기업들이 관련 이슈에 대한 위험 및 기회 분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난제로 꼽히는 E(환경) 분야에 대해 유예 항목을 지정했다. 특히 75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Scope 3 배출량 및 S1 항목에 대해 1년을 유예하였다. 이외 생물다양성에 대한 모든 공시 요구사항은 2년을 유예하여 2027년 까지의 미공시를 허용하였다. 다만, E1(기후변화)의 경우 중대 이슈로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공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 왜 중요 이슈로 기후변화가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세부설명을 요구하였다.

임직원 750명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미만 기업 대비 유예 항목이 덜 적용되며 특히 E4(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공급망 실사(CSDDD)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S2(밸류체인 내 근로자)항목과 S3(지역사회), S4(소비자 및 고객)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업은 유예사항으로 적용되더라도, 공시 이행기간 이전, 사전적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행시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ESRS 유예 사항 및 공시시기

ESRS	중대 이슈로 포함될 시 공시 사항	임직원 750 미만			임직원 750 이상		
		FY 2025	FY2026	FY2027	FY 2025	FY2026	FY2027
2	SBM-1	2026년 섹터 분류 확정 전까지 유예			2026년 섹터 분류 확정 전까지 유예		
	SBM-3	중요한 임팩트, 위험 및 기회와 전략과 사업 모형의 상호작용	SKIP	→	SKIP	→	→
E1	E1-6	스코프 1, 2, 3 배출량 및 GHG 절대 총배출량	SKIP	→	→	→	→
	E1-9	중요한 물리적·전환 위험과 잠재적 기후 관련 기회로부터의 예상 재무적 영향	SKIP	→	SKIP	→	→
E2	E2-6	오염 관련 임팩트, 위험 및 기회로부터의 예상 재무적 영향	SKIP	→	SKIP	→	→
E3	E3-5	물과 해양자원 관련 임팩트, 위험 및 기회로부터의 예상 재무적 영향	SKIP	→	SKIP	→	→
E4 (모든 사항)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SKIP	→	→
E5	E5-6	자원사용과 순환경제 관련 임팩트, 위험 및 기회로부터의 예상 재무적 영향	SKIP	→	SKIP	→	→
S1	자체 근로인력에 대한 공시사항		SKIP	→	→	→	→
	S1 - 7	자체 인력의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SKIP	→	SKIP	→	→
	S1 - 8	단체교섭 적용범위 및 사회적 대화	SKIP	→	SKIP	→	→
	S1 - 11	사회 보장	SKIP	→	SKIP	→	→
	S1 - 12	장애인	SKIP	→	SKIP	→	→
	S1 - 14	건강 및 안전	SKIP	→	SKIP	→	→
	S1 - 15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SKIP	→	SKIP	→	→
S2 (모든 사항)		밸류체인내 근로자			SKIP	→	→
S3 (모든 사항)		지역사회			SKIP	→	→
S4 (모든 사항)		소비자 및 고객			SKIP	→	→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위해

### 공시 규제 모니터링

- CSRD는 EU 역내 법인 뿐 아니라, 역외 기업들 중 EU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음. 다만 의무화 시점에 대한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업은 적용 요건, 시점, 보고 범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
- CSRD 공시 지침은 ES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공시 이행을 위해, 이중중요성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이슈 식별

### 진단을 통한 현황 모니터링

- 기업에게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파악했다면, ESRS에 명시되어 있는 지표들과 기존 발간하였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재 ESG 경영 현황을 기반으로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 진단필요
-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진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과 개선과제 수립
- 공시 우선순위 아젠다를 설정하여 단기, 중기, 장기별 대응 세부 계획을 수립

### 체계 구축 및 고도화

- 공시가 필요한 활동 내용, 데이터 취합을 위해 전사 연결기준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구축 및 항목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공시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프로세스 수립
- 보완 및 개선과제로 도출된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경영진, 이사회를 포함한 의사결정체계 고도화

### Phase 1 **현시점** 규제파악 및 현황진단

- 적용 기준 부합성 확인 (국내 본사 및 역내 법인)
- 공시 이행 필요 년도 확인
- 공시 이행 주체 확인  
- 역내 자회사/종속회사 이행 한계가 있을 시 최종 모기업의 체계 마련 및 지원 필요

### Phase 2 **By 공시 년도 -1yr** 보완/개선과제 수립 및 이행

- 현행 데이터 관리 체계 파악 (역내 자회사 및 종속회사 포함)
- 데이터 품질 진단 (검증 및 외부 인증 현황)
- 보완/개선 사항 도출 후 기간별 이행 전략 수립

### Phase 3 **공시 년도**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공시 이행

- 전사 일원화 보고 체계 수립 및 데이터 취합 이행
- 데이터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경영진 및 이사회 역할 강화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 “기업의 공급망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속가능성 규제”

COVID-19로 유발된 지정학적 격변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은 코로나 이후인 지금 이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아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시급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업 뿐만이 아니다.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외부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자국 내 공급망을 통한 자국 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EU 지속가능성 정책, 규제 그리고 이니셔티브 또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말한 CSRD 공시 요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 운영을 위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공급망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for Supplier) 조항 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주요 협력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선도적 기업들은 관련 증빙자료 및 데이터 공유를 요청하여 실질적 이행 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이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급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약을 이행해야 할지 또는 경고 및 계약 해지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까지는 공급망 리스크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자체적인 리스크 헷징을 위한 행동 규범 제정 및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EFRAG가 수립한 CSRD 공시이행을 위한 ESRS 기준 내 가치사슬 공시 지표를 수립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뿐만이 아닌 EU회원국 내 종속회사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장품 산업 특성상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해야하는 규제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EUDR)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산림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파괴 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규제 대상 품목을 지정하였다. 규제 품목 중 화장품 원료 중 식물성 유래 글리세린의 원료인 팜유가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EU 역내에서 이러한 규제 제품 및 파생상품을 공급 또는 수출하는 기업들은 EUDR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화장품은 파생상품 목록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럽내 국가로 수출을 이행하는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팜유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함에 따라 추후 규제 대상 확대 논의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규제명	도입 검토	입법 동향	발효	적용시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22.1분기	3년 간 협상을 거쳐 '24년 5월 EU 이사회 타협안 최종 승인	'24.07	'27. 1분기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21.4분기	'19년 EU가 수립한 산림보호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기반으로 '21.11 유럽연합 집행위의 규정 초안제안 후 '23.05 규정 채택	'23.06	'24.12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관보에 게재되어  
2024년 7월 25일 발효.  
이후 2년간의 회원국 내  
국내법 전환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기업에 적용”**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가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구현을 위해 2019년 발표한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0년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계획을 마련하며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급망 실사 관련 법은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며, EU가 환경, 인권, 노동 등 유럽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해 그린딜 이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EU는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광업, 임업 부문을 대상으로 분쟁 광물 규정(Conflict Minerals Regulation, 2021.01), 목재 규정(Timber Regulation, 2013.3월)을 마련해 실사 관련 법률들을 시행해 왔다.

이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내 실사법을 제정해 적용했지만, 국가의 법안 내용은 국가 실정을 반영하였기에 하나의 국가뿐 아니라 여러 회원국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실사 관행을 도입하였으나 참여 저조, 관리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EU는 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CSDDD 지침을 도입하여 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실사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EU 집행위원회가 실사 법안 계획을 발표한 후 약 3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3년 말에 가까스로 3자 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2024년 2월 EU 이사회가 합의안을 부결하면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으나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의 적극적인 주도로 협상이 재개되었고, 3월에 최종 타협된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타협안은 4월과 5월 말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관보에 게재되어 7월 25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2년간의 회원국 내 국내법 전환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기업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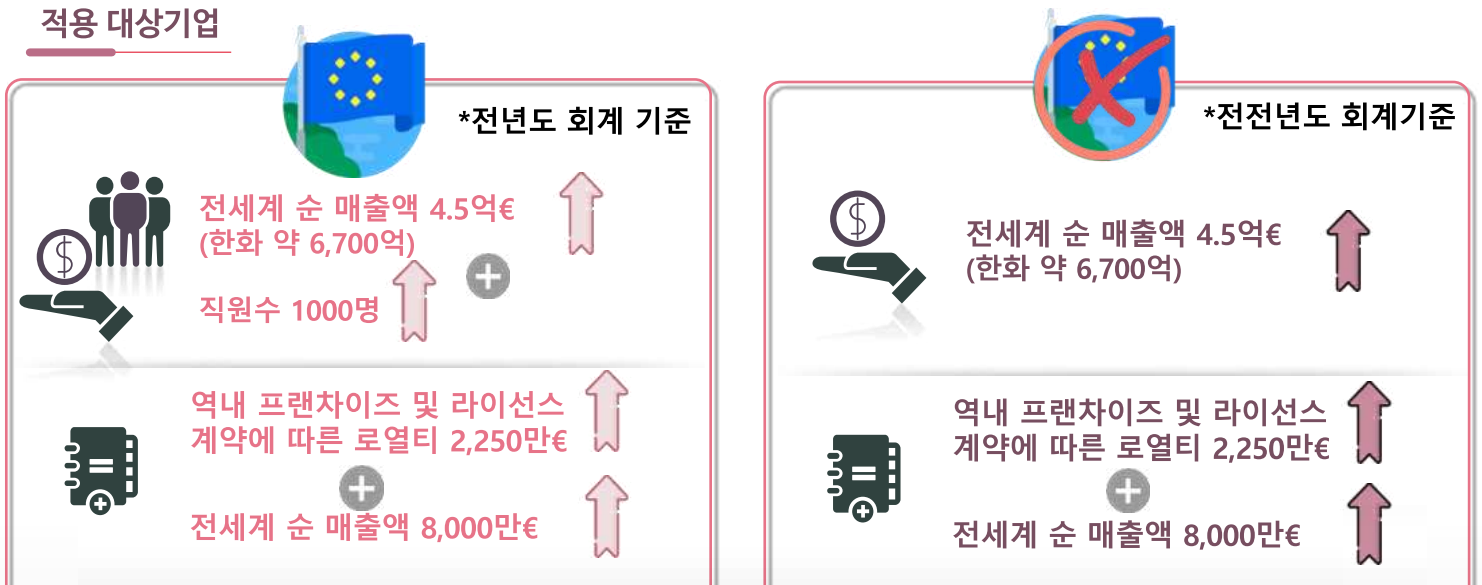
### 지침 추진 경과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역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기업이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어 최종 모기업이 EU 역외에 소재해 있더라도 역내에서 발생한 연결 매출액 기준이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

### 적용 대상기업



해당 기업이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종 모기업이 충족 시 적용 됨

### Check Point



#### 매출액 및 직원 수 산정 기준은?

→ 제품 판매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 연평균 직원 수(용역, 비정규 포함)

#### 자회사의 범위는?

← 의결권 과반수 보유 Or 행정, 관리, 감독 구성원 과반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보유함과 동시에 주주 또는 구성원인 경우

#### 최종 모기업의 범위는?

→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가장 상위 기업

#### 최종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한 실사 수행 가능여부는?

←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중소 중견기업의 적용 여부는?

→ 중소기업은 CSDDD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실사 의무기업의 공급망 포함 시 실사 대상이 됨



프랑스 소재 법인 A의  
순매출액 4억 유로 및 직원 수 900명



한국에 있는 최종 모기업 B사의  
EU역내 순 매출액 6억 유로



#### 모기업

자회사 A, B 모두 적용 기준 충족 X  
그러나, 자회사 합산 매출액이 적용 기준 충족



#### 스페인 자회사 A

역내 순매출액 4억 유로, 직원 수 800명



#### 폴란드 자회사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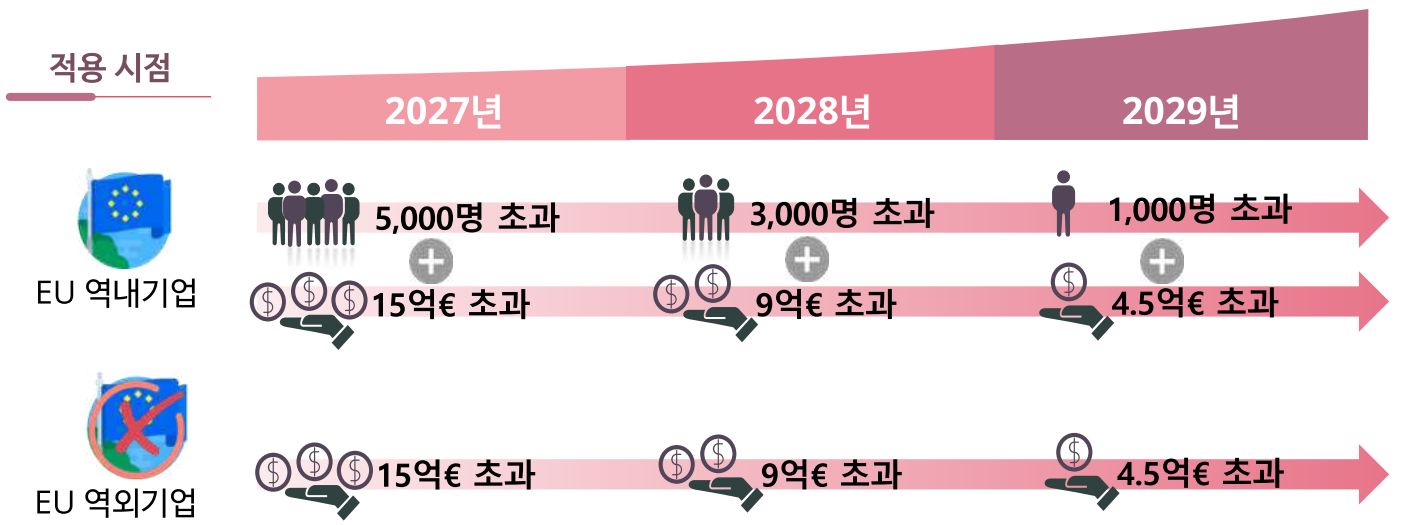
역내 순매출액 2억 유로, 직원 수 500명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지침(Directive) 특성상, 2024년 7월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준다. 이후, 기업규모 및 적용 기준에 따라 법안은 3~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 자체적 활동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속해있는 협력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실사가 필요하다. 공급망이란 일반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품이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활동에 포함해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업스트림' 과 '다운스트림' 으로 구분된다.

화장품 산업의 공급망은 원료, 부자재,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로 구분된다. 특히, 제조시설이 없어도 위탁생산이 가능한 책임판매업자 제도를 2012년 도입한 이후 중소 책임판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치사슬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책임판매업자는 제조를 이행하지 않으나, 제품의 유통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가 아닌 책임판매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원청업체의 실사 요구 시 중소 중견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원료 생산부터 부자재제조, 완제품 제조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파악과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실사 대상 범위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적용 받는 실사 의무기업은 인권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실사해야 하며, 세부 항목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부속서 파트 1, 2에 명시되어 있다. 파트 1은 국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 및 금지 사항과 인권 및 기본권에 관한 규약을 다루고 있으며, 파트 2는 환경 협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실사 항목으로 구분된 두 가지 분야별 명시 항목은 하기와 같다.

### 실사항목

#### 인권 분야

1. 생명권
2.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 금지
3.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4. 개인의사생활 또는 통신에 대한 간섭 금지
5. 사상, 양심 및 종교 자유 침해 금지
6.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향유의 권리
7. 사택 거주 근로자 대상 의식주 제한 금지
- 8,9,10 아동권 보호, 고용금지
11. 강제노동 금지
12.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노예 매매 금지
13. 결사의 자유, 집회, 단결 및 단체교섭 권리
14. 고용 요건에 정당화되지 않는 불평등 대우 금지
15. 자연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행위 금지
16.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개인 집단의 생계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 환경 분야

1. 생물다양성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의무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 금지
3. 수은 첨가제품의 제조, 수입 및 수출 금지
4. 제조공정내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사용 금지
5. 폐기물의 불법 처리 금지
6. 스톡홀름 협약(POPs 협약) 부속서 A에 열거된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 금지
7. 폐기물의 불법적인 취급, 수집, 보관 및 폐기 금지
- 8,9,10 유해화학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유해폐기물 대상 불법적 수출입 금지
11. 바젤 협약 부속 Vii 내 기재된 국가에서 기재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 금지
12. 바젤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당사국으로부터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수입 금지
1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부정적 의무 최소화
14. 람사르 협약내 국제적 습지 부정적 의무 최소화
15.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16.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 감소 및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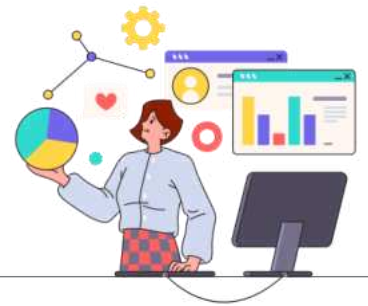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CSDDD를 기반으로 기업이 공급망 대상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 이행을 통해 공시하기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실사 이행에 대한 공시 이후 기업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실사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협력사 경영에 있어 인권 및 환경 측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식별되어 완화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업관계를 종료할 결정한 사항 또는 매년 협력사 대상으로 준수가 요구되는 행동규범의 개정 사항,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수립 현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자회사 또는 협력사 대상 예방/완화/시정 조치 및 사업관계 중단의 조치를 결정하기에 자회사 및 협력사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는 최종결과가 사업관계중단의 결정까지 이뤄질 수 있어 자회사 또는 협력사의 경영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고충 사항들을 기반으로 자회사 및 협력사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실사 이행 절차

#### 기업 정책 전반에 실사 내재화

- ✓ 실사 의무기업은 기업 자체, 자회사 및 협력사가 준수 해야 할 환경 및 인권 관련 정책 및 행동규범 마련

####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 ✓ 공급망이 위치한 지역, 부정적 영향의 발생가능성 분석
- ✓ 파악된 영향 별 심각성 및 가능성기반 우선순위화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의 예방 및 완화

- ✓ 예방 조치 계획, 개발 및 이행
- ✓ 협력사 대상 계약상 보증 요청
- ✓ 완화를 위한 투자 조정
- ✓ 구매 관행을 포함한 기업의 정책 개선
- ✓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
- ✓ 신규 협력사 발굴 및 기존 사업 관계 중단

####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및 최소화

- ✓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즉각 중단이 불가할 시, 3단계 적용
- ✓ 단, 완화 조치가 이행 되지 않을 시 심각성 고려 후 사업 관계 중단

#### 부정적 영향의 시정

- ✓ 실사를 통해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시, 시정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으로 복구
- \*복구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보상 이행을 통한 시정 필요

#### 모니터링

- ✓ 협력사의 실사 정책 준수 및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점검
- ✓ 최소 연간 단위 시행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점검)

#### 실사 공시

- ✓ 실사 이행내용을 연 1회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
- ✓ EU 역외 기업의 경우 공시 시 역내 공식 대리인 정보 제출 필요
- ✓ 2029년부터 국가별 유럽 전자 공시 시스템(ESAP) 수집기관 제출 필요
- \* 단, CSRD 보고 요건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 면제

## 산림전용 방지 규정 EUDR

**“산림 전용은 산림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 EUDR은 산림 전용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시한 전세계 최초 법안 ”**

EU의 산림전용 방지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은 2023년 6월 29일 발효된 규정으로 열대우림 및 기타 산림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특정 상품들이 산림 파괴와 관련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4억 2,000만 ha에 달하는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만 ha가 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산림 용도의 전환 결과가 생물다양성 감소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탄력성 감소 및 가속화, 물 부족 및 식량 생산량 감소 등의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EU는 산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법률 및 규정을 꾸준히 제정해왔다. 『EU 목재 규정(2013)』 『산림법 집행·거버넌스·무역 행동 FLEGT(2003)』은 EUDR 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EUDR은 유럽 소비자가 구매, 사용 및 소비하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한 연간 탄소 배출량을 최소 3,200만 미터 톤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EUDR은 불법 벌채에 의한 산림전용에 초점을 둔 이전 2개의 규정보다, 규제 품목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으로 보다 확대되었으며, 원산지 및 토지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에서 위도 및 경도가 포함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규정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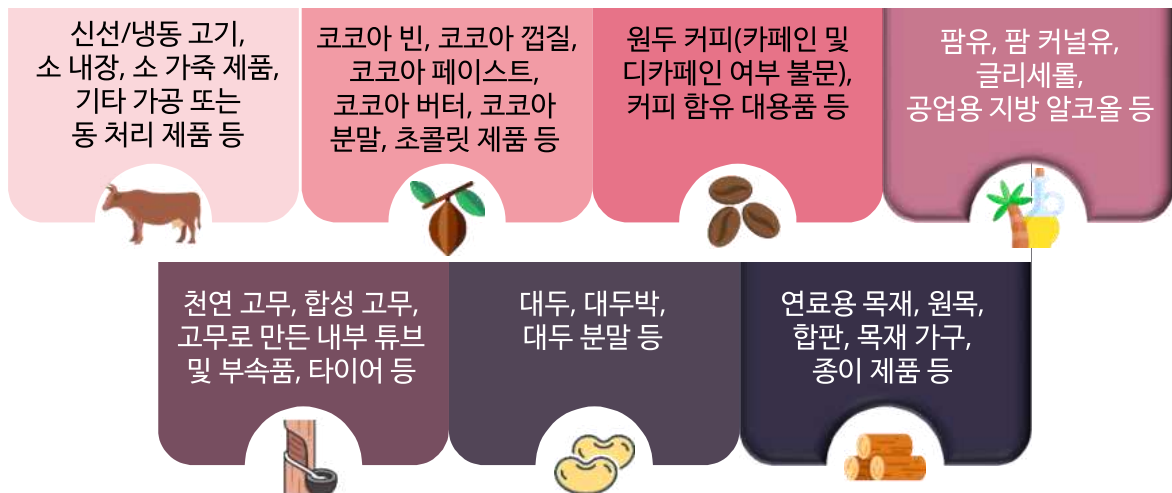
## 삼림전용 방지 규정 EUDR

EUDR 규정은 전 세계 산림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7대 품목을 선정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규제 품목을 포함하거나, 공급, 사용하여 만든 관련 제품에 규제가 적용되며 2023년 6월 29일 이후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UDR 규정을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이 주목해야 할 규제 품목은 팜유이다. 화장품 제조에 있어 팜유 유래 성분은 팜넛트 오일, 팜오일, 팜핵유, 글리세린,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등으로 보습, 세정, 유화 기능, 또는 제품 수명을 연장함에 따른 안정성 강화 및 부드러운 질감을 위해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은 파생상품 목록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국내에서 생산하여 완제품을 유럽시장에 출시할 시에는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단, 국내 기업이 유럽 회원국내 생산법인을 보유하여 팜유를 조달할 시 조달한 팜유를 포함,공급,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유럽시장에 출시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화장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당장 화장품이 파생제품으로써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팜유에 대한 지속가능한 조달·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인증(RSPO)을 취득한 팜유를 조달받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규제 적용 대상 및 제품



#### 팜넛트와 핵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에 상관없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의 조유

그 밖의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

팜넛트나 핵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순도 95% 이상의 글리세롤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기타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

## 삼림전용 방지 규정 EUDR

EUDR은 규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거나 파생된 제품을 EU 역내 시장에서 취급하는 '운영자'와 '거래자'에게 적용된다. 규제 품목을 포함, 공급,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역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규정 및 조항을 기준으로,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HS코드를 부여 받은 관련 제품이라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규제범위 확대 가능성에 따라서 사전적인 대응은 필요하다.

세부 실사 절차는 올해 12월 30일 발표 예정인 국가 위험 수준 분류에 따라 각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실사 절차와 규제 강도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고위험 국가로 분류될 시 실사 이행에 필요한 비용적·시간적 기회비용을 분석하여, 조달 국가를 변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DR 규정이 발효된 이상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규정 미준수와 위험이 발견된 경우 기업은 판매가 규제될 수 있으며,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EUDR 규정에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 주체별 이행 필요사항

EUDR

#### 운영자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운영자(Operator)'

- ✓실사 의무 이행
- ✓규제 제품 EU 시장 출시 및 수출 전 관할 당국에 실사 선언서 제공
- ✓실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 ✓제3국 사업자가 EU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EU시장에 공급하는 법인을 운영자로 간주 \* 국내기업이 유럽내 생산장을 보유하여 팜유를 조달할 시 이에 해당
- ✓규제 대상 상품이 EUDR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경우, 즉시 거래자에게 통보

#### 거래자

운영자 이외에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인 '거래자(Trader)'

- ✓규제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최소 5년 수집 및 보관
- ✓정보 보유 시만 해당 제품 출시 가능
- ✓규제대상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못할 시, 즉시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함

#### 공인 대리인

- ✓운영자 또는 거래자는 공인 대리인 위임을 통해 EU 공식 언어로 작성된 위임장 사본 제공가능

#### 저위험 국가

양적, 객관적 국제적으로 인정  
데이터에 따라 위험이 낮은 지역



#### 고위험 국가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일부 지역



2024.12.30  
전세계 모든 국가 위험  
수준 분류 발표 예정

##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 공급망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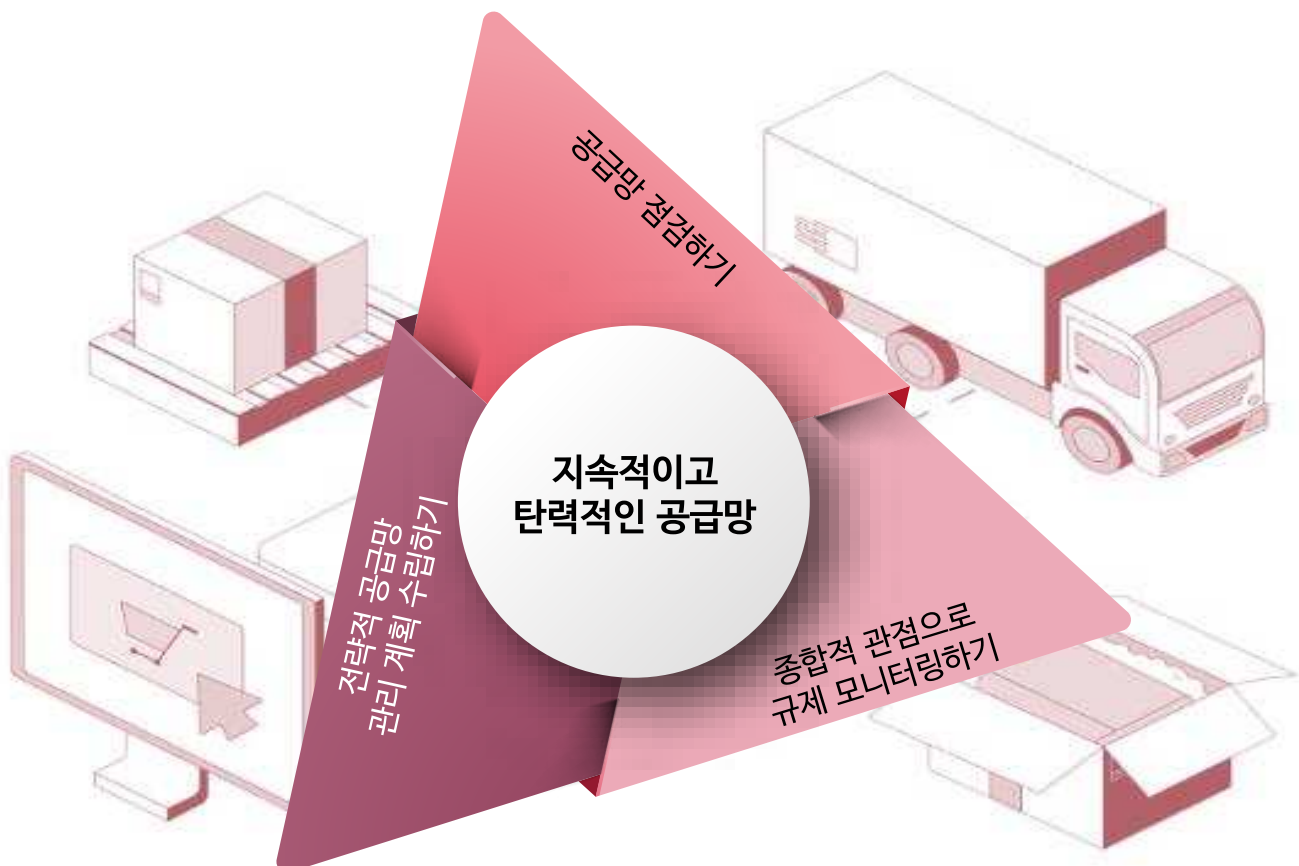
- CSDDD, EUDR 규정에 포함된 금지 사항, 제한 사항 또는 목표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 실사 이행 또는 협력사 대상 실사 이행
- 일부 기업은 공급망 실사 이행 시,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 공급업체를 발굴하거나 기존 공급업체와의 계약 중단 검토
- 기존 공급망과의 사업 관계 유지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점검을 통한 개선 및 리스크 완화 조치 선제적 수행
- EU 규제 당국이 정한 기한 이전에 선제적 조치 이행

### 종합적 관점으로 모니터링 하기

- 국내 화장품산업 내 포함된 기업들은 원재료 조달, 부자재 및 완성품 제조, 유통 범위를 포괄하거나 특정 부문에만 포함될 수 있다. 기업 및 공급업체 특성별 취약점 파악
- 재무, 내/외부 리스크 관리, 원재료 조달 부서, 구매 부서, 영업 부서간 협업 및 연결성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데이터 및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전략적 계획 수립하기

- 공급망의 공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련 규제의 진전 지속적 모니터링
- 공급업체 대상 실사 이행 시 취합 및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 및 경영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또는 컨설팅과 같은 지원책 마련 필요





##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 주요 수출산업 화장품 업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친환경 용기 및 포장' 전환

폐기물에 대한 환경이슈가 대두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 및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은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리필 제품, 재활용가능한 용기 등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해 지면서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 뿐만이 아닌 패키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소비재인 화장품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 까지 짧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화장품 용기의 대부분이 복합 재질이며, 제품의 특성상 제품 디자인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여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구조상 분리가 어려워 재활용 가능한 특정 부분까지 재활용으로 분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주요 이슈이다.

화장품 업계에 불어오는 친환경 바람은, 패키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사용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화장품을 업사이클링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뷰티 트렌드가 자리잡아 생분해성 제품, 플라스틱 프리 제품의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에서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가격대비 효과를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이 존재하여 이에 대응한 가격과 제품에 지속가능성을 더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생산은 기업의 양적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적 요소이다.

#### 국내 화장품 기업의 친환경 용기 개발 현황

<p><b>아모레퍼시픽</b> AMOREPACIF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부터 워시오프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배제</li> <li>신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절감을 위해 자사 공병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50%를 적용</li> </ul>
<p><b>Lg 생활건강</b> LG 생활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적인 제품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그린제품 협의회 운영</li> <li>2023년에는 용기 경량화, 재질 개선, 재생 원료 사용, 재활용성 개선 등의 분야에서 총 26건의 포장재 개선</li> </ul>
<p><b>한국콜마</b> KOLM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기준 대비 86% 저감한 종이스틱 용기 개발</li> </ul>
<p><b>연우</b> YONW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화솔루션과 2021년 공동연구를 통해 rPE 원료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 개발</li> <li>2030년까지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의 50%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li> </ul>
<p><b>코스맥스</b> COSMA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라운드블루와 목분, 왕겨 등 100% 바이오매스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추진</li> <li>LG화학, SK케미칼 등 국내 소재 전문 기업들과 협업</li> <li>2030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한 전 제품의 생산중단</li> </ul>

#### 사례\_ 개별 화장품 용기의 분리 배출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하단 제품 상세페이지에 화장품 제품별로 각 1·2차 포장재의 각 부분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설명 제공

Source : 스킨푸드 공식 홈페이지

##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특히 플라스틱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4300만 톤에서 2019년 4억6000만 톤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국내를 포함하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자국내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국가들이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까닭은 자국내 폐기물 감축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함이다. 이에 역내 외국가에서 수입 또는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규제로 적용된다.

EU는 플라스틱 규제에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유럽 포장재 규제를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깨닫고, 강제성이 부여된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하여 2022년 11월 30일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PPWR)을 발표하였다.

PPWR은 EU수준의 조치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적 포장 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이 목표이다. 현재 라벨링 요구사항,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의 정의, 특정한 포장재의 금지 및 규제 조항이 회원국별로 상이하여 EU내 통합적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PPWR이 수립되었다. 이는 지침이 아닌 규제로 적용되는 바 회원국별 전환이 아닌 모든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강제력 및 이행 필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전세계 4위의 실적을 달성하며 국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산업이며, 특히 중국 수출이 계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중국을 제외한 유럽, 북미, 아시아 권역에서 수출 다변화 흐름이 명확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내 화장품 산업은 포장재 및 제품의 순환성관련 규제 대응 전략을 이행하여, 수출 및 신규기회 창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제명	도입 검토	입법 동향	발효	적용시점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22.4분기	'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최종 승인 후, 이사회 최종 채택 예정	'24. 4분기	발효 18개월 후
EU 플라스틱 세 (EU plastic tax)	'20.2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	'21.01	'23.01
지속가능한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22.1분기	'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최종 승인 후, 이사회 최종 채택	'24.07	'27. 2분기



#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PPWR 규정에 따라 2030년 까지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포장재 또한 동일하다. PPWR은 공급업체부터 폐기물 관리 회사에 이르기까지 포장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됨에 따라 포장 지속 가능성 규칙과 투명성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 적용 범위

### - 이행주체

공급자, 포장재 & 제품 제조사, 유통업체  
폐기물 관리 기업

### - 제품

모든 타입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 포장 최소화

### - 과포장 제한

제품 보호 목적 외 포장내 종이 커팅, 에어쿠션, 버블랩을 활용한 빈공간 비율 최대 50%로 제한

###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30년부터 소용량 화장품, 과일, 채소 등의 신선 식품, 숙박업소의 소포장 세면도구, HORECA 부문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금지

### - DRS 재활용 보증금 환불 제도

'29년부터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제도 EU회원국 전체 확대 시행 (일회용 플라스틱 병 및 최대 3리터 금속용기)

01

## 지속가능한 포장재 기준

### - 포장 폐기물 감축 의무화

포장 폐기물 '18년 대비 '30년까지 5%, '35년 10%, '40년 15% 감축목표

### - 재활용 포장재 가용 함량

소재	재활용 최소 함량	
	2025년 5월 3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부터
플라스틱	50%	55%
나무	25%	30%
철금속	70%	80%
알루미늄	50%	60%
유리	70%	75%
종이 및 판지	75%	85%

02

03

## 라벨링 투명성

### - QR 코드 라벨

사용자에게 재사용 관련 지침 정보 제공 의무

04

녹색 주장 문구 제한 (최소 요건 초과 경우 표시 허용)

### - 연도별 보고 의무

기업은 매년 PPWR 준수 이행에 대한 데이터 보고 의무 이행 필요

05

## 책임성 - Accountability

### - 생산자 책임 제도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폐기물 처 분의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부담금 납부

- 재활용 가능 수치에 따른 등급 별 차등 부과

등급	재활용 가능 수치
A등급	95% 이상일 경우
B등급	90% 이상일 경우
C등급	80% 이상일 경우
D등급	70% 이상일 경우
E등급	70% 미만일 경우

-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2차 원자재(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EPR 부담금 차등 적용




## EU 플라스틱 세 Plastic Tax

폐기물에 대한 환경 이슈가 대두되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의 생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PPWR 규제를 통해 유럽은 플라스틱 물질 사용과 관련해 산업계의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EU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대상 플라스틱세를 전격 시행하였으며 모든 EU회원국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내고 있다.

회원국들은 세금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각국별 플라스틱 관련 자체적인 세금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PPWR뿐만이 아닌 플라스틱세 도입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압박에서 나아가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자 하는 요구속에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환경 속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기회선점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 포장재 및 포장용기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체 수요 전망은 친환경 포장재 및 포장 용기 개발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어 화장품 산업계는 편승효과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EU회원국별 플라스틱 세 도입 현황

 <b>에스토니아</b>	<b>포장 소비세법</b> • 2017년 7월 Packaging Excise Duty Act 개정 • 유통되는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대상 적용 • 상품 유통주체 또는 유통 대행자가 세금을 부담	<b>면제기준</b> • 최소 85% 재활용 • 외교적 용도 및 선박 및 비행기 판매용 포장  <b>세율</b> • kg당 € 2.5
 <b>헝가리</b>	<b>환경보호제품요금(EPC)에 관한 법률</b> • 2011년 EPC 법안 발효 • 2023년 EPR에 따른 수수료 및 행정 절차 의무 시행  <b>[EPC]- 제조/유통업자 및 국내 공급자 부담</b> -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레이트, 시트, 필름, 호일 - 상품의 운반 및 포장을 위한 플라스틱 물품 - 플라스틱 마개, 뚜껑, 캡 등 -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 기타 플라스틱 포장 제품 등  <b>[EPR]-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 부담</b> - 1차, 2차, 3차 포장에 쓰이는 포장재 및 플라스틱	<b>[EPC]</b> <b>면제기준</b> • 포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품원료)  <b>세율</b> • 일반 플라스틱 : kg당 57 HUF  <b>[EPR]</b> <b>면제기준</b> •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출시되는 경우  <b>세율</b> • 플라스틱 포장재 : kg당 219 HUF • 일회용 및 플라스틱 제품 : kg당 113 HUF
 <b>리투아니아</b>	<b>오염세에 관한 법률</b> • 2002년 세금규정 도입 후 2021년 개정 • 플라스틱, PET, 복합 포장재 적용 • 충전 포장재 제조 및 수입업체가 세금 부담	<b>면제기준</b> • 폐기물 회수가 재활용 실적에 비례할 시 • 과세기간 중 포장재 총량이 0.5톤 미만 • 국가 재사용 포장재 기준 준수 시  <b>세율</b> • 플라스틱 및 PET 기반 재사용 가능한 포장 : Ton당 € 618 • 복합재료 기반 재사용 가능한 포장 : Ton당 € 520 • 플라스틱 및 PET 기반 재사용 불가능 포장 : Ton당 € 875 • 복합재료 기반 재사용 불가능한 포장 : Ton당 € 1,200

## EU 플라스틱 세 (Plastic Tax)

## EU회원국별 플라스틱 세 도입 현황



영국

## 플라스틱 포장세

- 2022년 4월 Plastic Packaging Tax Act 발효
- 영국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 수입업체 및 제조 업체, 플라스틱 포장을 활용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체가 세금을 부담

면제기준

- 운송포장 및 12개월내 영국에서 재수출되는 경우
- 포장이 상품의 필수 요소인 경우(카트리지 등)

세율

- 재활용 플라스틱 30% 미만일 시 톤당 £217.85



스페인

## 광범위한 폐기물 미 토양오염 입법안

- 2023년 broader waste and contaminated soils legislative package 발효
-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대상
- 포장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세금을 부담

면제기준

- 재활용 플라스틱을 인증 받았을 경우
- 의약, 위생, 특수의료용 제품에 사용될 경우
- EU 역내 재사용 불가능 플라스틱을 월간 5KG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율

-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kg당 €0.45



슬로베니아

## 포장 및 폐기물 오염에 관한 환경세 규정

- 2006년 발효
- 플라스틱 폐기물 및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대상
- 포장재 수입업자, 생산자, 포장업자가 세금을 부담

면제기준

- 판매 및 사용 포장재의 양이 연간 1.5톤 미만
- 포장재가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 \* (PVC)를 원료로 생산된 경우는 면제 미적용

세율

- kg당 환경 부담 단위 및 포장수량을 고려한 부과



불가리아

## 폐기물 관리법

- 2012년 발효
- 플라스틱 쇼핑백 및 플라스틱 포장 대상
- 불가리아 내 플라스틱 포장재 출시한 주체, 폐기물 분리수거, 재사용, 재활용 목표 미달성 업체 대상

면제기준

- 그림이 부재한 플라스틱 쇼핑백

세율

- Kg당 €1.2

프랑스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 관한 법률

- 2022년 1월 EPR 제도를 통한 '환경 기여금(Eco-Contribution)' 실시
- 포장재 및 포장제품 대상
- ERP 규정 해당 품목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기여금을 부담

면제기준

- 면제 기준 공개 필요

세율

- 재활용 재료 사용,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기여금 세율 및 단위당 가격 조정 전망



루마니아

## 정부 비상조례

- 2006년 발효 이후 2023년 개정
-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및 모든 유형의비닐봉투대상
- 루마니아내 포장 상품 도입 주체(1,2,3차 포장 포함) 판매용 포장재 제조업자가 세금을 부담
- \* 기여금 납부 대상자는 루마니아 환경기금관리국에 등록 필요

면제기준

- 면제기준 부재

세율

- 루마니아의 폐기물 회수 및 소각 목표 대비 실제 회수 및 소각되는 폐기물 양이 많을 시 초과분에 대해 kg당 €0.4 부과
- 비닐봉투 개당 €0.03 부과



##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이미 유럽 현지에서는 이미 재활용성을 높인 포장재가 도입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들이 적극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EU 수출을 진행·고려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은 정책 및 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EU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재를 개발 및 사용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장재 및 포장 용기 사용 저감을 통한 자원 순환성 달성을 위해 시급한 노력이 촉구된다.

### Strategy Setting

- 화장품 산업계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선택부터 재활용 비율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디자인
- 재활용 가능 수치 최소 E등급(재활용 가능 수치 최소 70%) 달성으로 EU 시장내 제품 출시 리스크 최소화
- \* 선도적 규제 대응을 위해 A~C 등급 요건에 맞는 재활용 목표 수립

재활용 기준 및 등급에 대한 2차 법률 채택은 2028년으로  
2년내 PPWR의 2030 수치를 준수해야 함.  
과포장, 분리배출 효율성을 고려한 재활용율 상향

### Strategic Task

- 부자재 (화장품 용기) 기업은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설비 시설 투자 및 생분해성 원료와 같은 원재료 전환
- 화장품산업 전반의 인프라 전환을 위해 완성품 제조업체는 부자재기업 및 신기술 개발 기업과 협력 추진

### Enhance Consumer Engagement

-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효과적 소통
- 소비자에게 사용된 재료, 수거 및 회수된 용기 및 포장의 세척 절차, 지속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참여 유도
- 리필스테이션 확충을 통한 소비자 참여 효율성 제고, 초기 구매 가격 대비 리필가격 인하, 보상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센티브 활동 추진

01

02

03



## 순환성 - 에코디자인 규정 ESPR

자원 순환성은 화장품업에게 필수 불가결인 이슈다. 현재, 유럽인 1인당 만들어내는 포장 폐기물의 양은 연간 180kg이며, 만약 EU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은 19%,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EU가 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업의 제품 디자인, 포장재, 제품 수리 능력 그리고 수명이 다한 폐기물 처리 지원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에서는 특히, 제품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높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순환 디자인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규제로 도입됨에 따라 자원 순환성 관련 규제가 위기가 아닌 신규 기회 창출로 활용하기 위해 EU의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EU는 2019년 신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EU 전역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0년 핵심 전략으로 '신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원료생산-제조-폐기 단계인 선형적 경제 모델이 아닌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EU의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발효된 EU의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개정하여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지침은 가전 등의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만을 주요 요건으로 명시하였으나 신규 개정 지침은 모든 물리적 상품 (Physical goods)로 대폭 확대하였다. 우선순위 품목군에는 철강, 알루미늄, 섬유,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유, 화학물질, ICT 제품군이 포함 되어있다. 우선순위 품목군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 뿐 아니라 소비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화장품 산업은 품목군 및 품목별 이행 규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SPR은 기존 지침이 주로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수리 용이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 요건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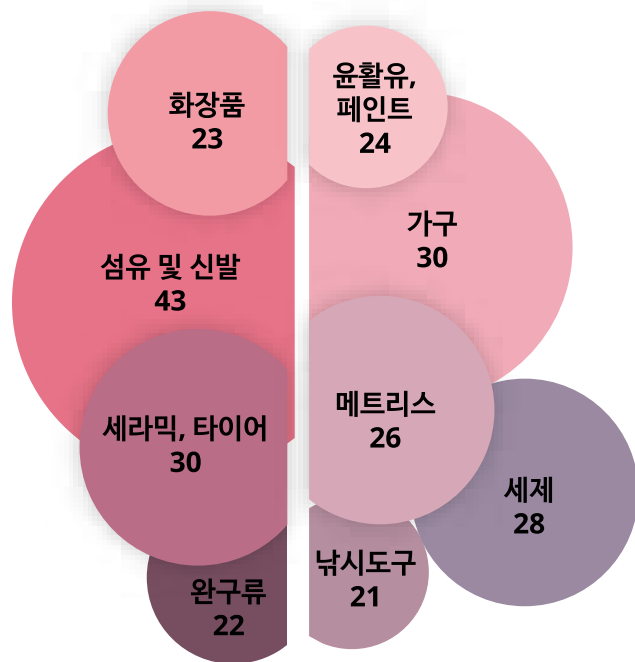
## 에코디자인 규정 ESPR

에코디자인 규정은 전 주기 관련 정보가 담긴 디지털 제품 여권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유해 물질 함유량, 탄소 배출량,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을 위한 제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된 에코디자인 규정 ESPR 은 모든 물리적 품목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또는 향후 진출 확대를 고려하는 화장품 기업들은 이행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출시해야 한다.

현재 화장품은 우선순위 제품군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 지속 가능성 및 순환성 개선 가능성, 경제적 비중 및 정책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화장품은 예비 순위로 에코디자인 규정의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화장품 기업들은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에코디자인 고려 제품군 예비순위 검토결과



출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신규 제품 우선순위에 대한 예비연구 2023.03.10

### ESPR 규정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 제품의 특성을 고려, 제품군별 내구성·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의 요구사항 설정 예정
- 발암물질 등 우려 물질 최소화, 제품에 우려물질포함시, 제품 내 위치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의정보공시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예정

- (적용 시점) 우선 적용 지정 품목의 DPP 도입은 '27년 중순 전망
- (포함 정보) 제조사 정보·제품 사용법·수리 가능성·재활용 및 폐기 정보 등
- (형식) QR코드 등 디지털 캐리어 통한 접속, 개방형 데이터 지향

#### 미판매 제품 폐기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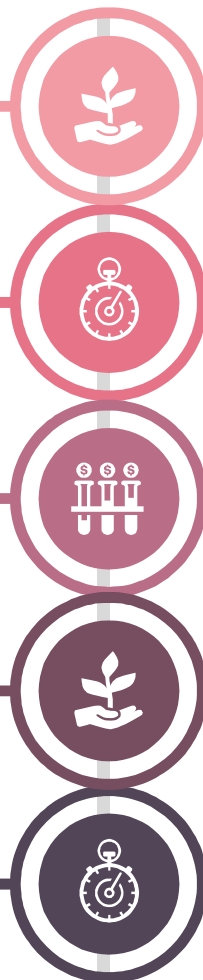
- (적용 시점) 대기업은 '24년도 정보 포함한 폐기 정보 공개, 중견기업은 '30.7.19일부터 적용
- (포함 정보) 미판매 폐기 제품 유형별 수량 및 무게·폐기 사유·폐기 방식을 위해 취한 조치 및 계획 등
- (공개 방식) 기업 홈페이지 내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정보 게시

#### 적용대상

- 역대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품목 및 디지털 콘텐츠(단계적 적용예정)
- 식품·의약품·자동차 등 다른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안보 관련 제품은 적용 제외

####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위반 행위의 정도와 영향, 위반 횟수 등에 따른 벌금 부과(예정)
- 역대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하는 회원국별 국내법 마련(예정)



##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 파트너십 구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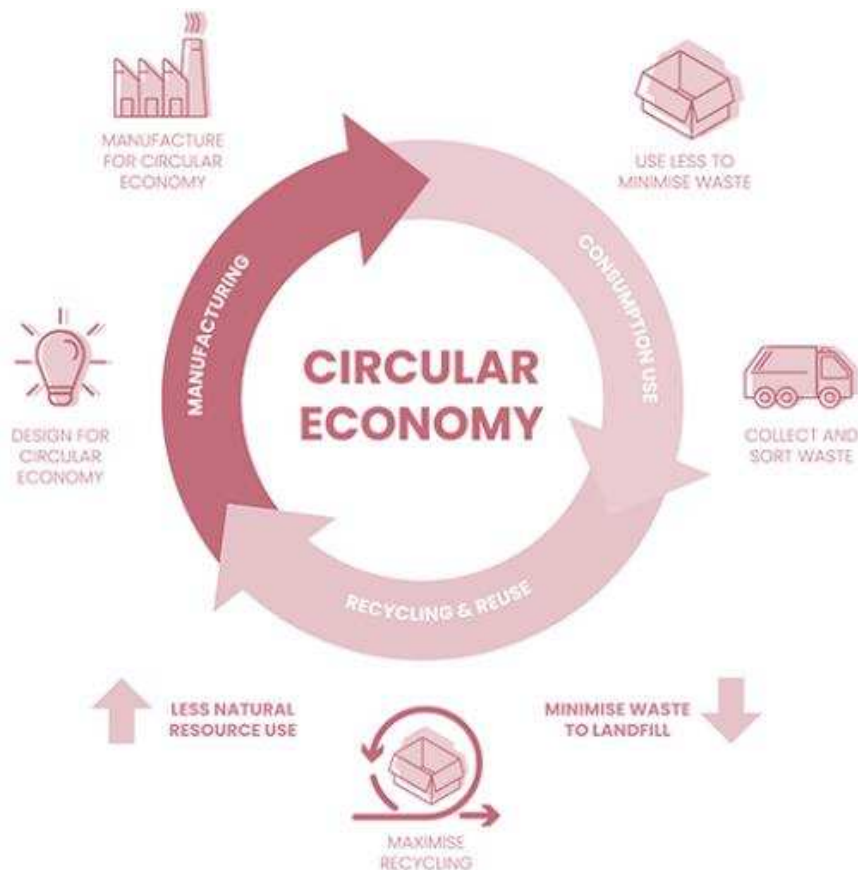
- 폐기물 배출 최소화, 제품의 전 과정 기반 관리를 위해 재활용 소재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질로 구성된 친환경 제품 전환
- 순환성 관련 규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가치사슬 간 파트너십을 통한 규제 부담 완화

### 순환경제가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 기업은 에코 디자인 규정과 포장재 및 폐기물 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의 핵심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식별
- 기업의 포트폴리오, 운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 및 개선 필요 사항 식별 및 담당자 지정을 통한 관리체계 수립

###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 구축하기

-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성 KPI를 검토하여 순환성을 포함한 전사적 관리 이행
- 규제 준수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략 보안을 위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품의 순환성에 대한 지표를 구축하고 정보 데이터화를 통해 대응이 요구될 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 그린워싱 (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가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실제로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마케팅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용어는 녹색 '을 의미하는 " Green " 과 ' 겹모습을 세탁한다 ' 는 의미의 " Whitewashing " 의 합성어이다.

기업의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 소비자는 기업의 광고 및 제품 내 친환경적인 문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구매한다. 단 이러한 주장이 과대광고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구매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86.4%의 소비자가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이 소비기준이라고 답하였으며, 일반 제품 대비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자는 95.3%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를 대하는 산업, 구매 빈도가 높고 필수품을 판매 및 광고하는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기업들은 그린워싱 위험성이 높다. 기업은 마케팅 과정에 친환경 용어를 과장되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차원이었으나, 소송 건수의 증가에 따라 그린워싱에 휘말린 기업들은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평판 악화를 통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직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2023년 5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표시에 대해 반드시 증거를 통해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이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지침이 최종 발효되면, 기업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주장하기 위해 생애주기(LCA)별 환경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

친환경 표시지침 도입과 함께 친환경 제품의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 'ECGT' 가 최종 승인되었다. 이는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2018

125

2019

153

2020

182

2021

284

2022

350

아시아권 그린워싱 관련 소송

5년 새 3배 증가

출처: Greenwashing risk accelerates for companies headquartered in Asia, Reprisk

규제명	도입 검토	입법 동향	발효	적용시점
친환경표시지침 (Green Claims Directive)	'22.1분기	'24년 3월 12일 유럽의회 승인 후 이사회 최종 승인 예정	N/A	'27년 예상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 (Directive for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22.4분기	'24년 2월 20일 이사회 최종 채택	'24.03	'26년 예상
영국	친환경 표시 코드 (Green Claim Code)		'21	'22~
프랑스	기후변화를 위한 투쟁과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3	'26년 예상
한국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23.9	'23.9

## 그린워싱 (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은 더 큰 호응을 얻기 위해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사용하여 ESG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관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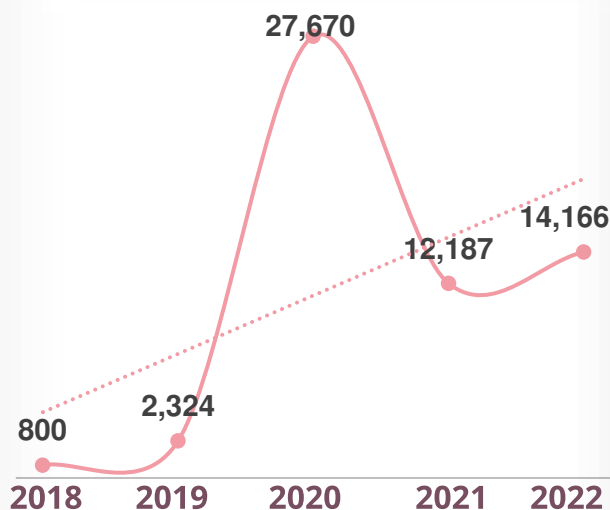
소비재 기업은 그린워싱에 특히 취약하다. 이는 제품 특성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많은 필수적인 제품인 만큼 친환경적 마케팅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환경단체들은 그린워싱 방지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으며, 소비자에게 친환경 마케팅을 통한 비용적 부담이 전가됨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그린워싱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실제 제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SG 관련 소송은 단순한 재무적 손해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파급효과가 존재하여 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사회적인 이미지 타격의 최소화를 위해 규제 및 제재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또한 그린워싱 사례 적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3년 9월 1일 『환경관련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시행하였으며 환경부는 2023년 10월 31일 한국환경산업 기술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친환경 위장 표시 광고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은 현재 식별된 제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기업이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영역에서 동일한 위반 항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표시와 광고영역 뿐 아니라 기업의 공시자료 및 탄소중립 선언과 같이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한 검증현황 및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그린워싱을 예방하는 친환경 경영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국내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및 광고 조사현황

국내 그린워싱 위반 제품 건수



Source: 환경부

### 환경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진실성	환경성 내용과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표현의 명확성	광고문구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 오인 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대상의 구체성	표시 광고가 제품 일부 또는 기업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
상당성	환경성 주장을 실제보다 과장하지 않아야 하며, 수치적으로 유의한 입증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발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자발적인 개선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함
정보의 완전성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관련성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미미한 사안에 관한 오인성이 없어야 함
실증 가능성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Source: 환경부



# 그린워싱 (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

## 글로벌 그린워싱 소송 사례

### 오인가능성이 있는 재활용 표기

**KEURIG**

미국의 캡슐커피 전문  
식품료 기업



- 캡슐커피 특성 상 분리 배출이 필요하나, 해당기업은 단순히 사용 후 폐기하여도 재활용이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활용 문구를 활용함
- 300만 달러의 벌금 및 시정 조치 명령

### 오인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포장 표기



미국의 SC존슨 사의  
생활용품 제조 기업



- 미국의 SC존슨사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브랜드
- '100%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용기'임을 광고에 명시
-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등의 비영리 플라스틱 수거 기업에서 공급받은 플라스틱임이 적발됨



### 실증적이지 않은 환경성 표기



영국의 생활용품 및  
소비재 제조사



- 영국의 글로벌 생활용품 및 소비재 제조사
- 유니레버의 대표 브랜드, 퍼실 (Persil)은 자구에 더 친절하다라는 근거 없는 광고 문구 게시
- 소셜 미디어의 연관 없는 해시태그 (#plantmoretrees) 설정으로 광고 금지 조치

### 정보의 완전성이 없는 중요 정보 은폐

**anglianwater**

영국의 용수 공급 및  
수도회사



- 자연 친화적인 습지를 조성하여 물을 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광고
- 하수를 강 및 바다에 대량 방류했음이 적발  
\*기업의 친환경성 경영활동과 표기 진실성에 대한 오인 유발 사례
- 265만 파운드의 벌금 조치

## 그린워싱을 극복하기 위해

### 예방적 접근

- 친환경 메시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품의 친환경적 데이터 검토
- 조직 전반에서 환경 성과를 고안, 소통,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재무적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 확보

###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 B2C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대상 제품의 메시지를 테스트하여 명확한 근거 재식별
- 컴플라이언스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ESG(지속가능경영팀)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제품의 친환경 메시지의 그린워싱 리스크 노출 가능성 파악

### 투명한 정보공개

- CSRD 공시 대응을 위해 수집, 처리, 보증한 데이터를 기업의 B2C 환경 관련 주장 입증 시 활용하여 환경적 영향의 명확한 근거 마련



“Greenwashing is the practice of using marketing and PR tactics to **overamplify your ESG efforts** for the purpose of gaining greater favor from consumers, investors, employees, etc.”

# Chapter 3.

## 화장품 기업의 대응 방향



## 화장품 산업과 ESG경영

화장품 산업은 판매하는 제품 및 주요 소비자의 특성상 ESG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고려하는 시점부터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자연 유래 성분을 통한 저자극 등 '착한' 성분을 가진 제품의 선호도가 높다. 또한, 화장품 산업의 주요 소비자인 MZ세대들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 및 환경가치를 고민하여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기업에게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은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을 어필 하고 더 나아가 신규 시장개척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CSRD는 EU에서 발효된 지침이나, 역내 역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에서 중요한 글로벌 공시지침으로 자리잡고 있다. 역외 위치한 국내 화장품 기업은 역내 기업대비 4년 정도 대응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역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 또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혹은 연내 규모적인 매출 성장을 이룬다면 보고 의무 시점은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기업은 CSRD 공시 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 접근성 향상 및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CSRD 공시의 우선 적용 기업들의 기준으로 보면 규모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보일 수 있으나, EU는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적, 인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CSDDD 지침을 도입하였다. 즉, EU 역내 법인에 화장품 부자재 또는 완성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화장품 기업에게 중간재를 납품할 시 중견·중소기업 또한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CSRD 공시 이행 및 실사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결국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 가공 조달하는 업체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U는 CSRD 공시준수를 위한 보고 표준 ESRS의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주제별 기준 공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자원순환, 그린워싱,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등의 다양한 규제 및 지침을 도입하고 있다. Chapter 2 에서 설명한 주요 규정들은 화장품 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화장품 산업계는 용기 및 포장재를 활용하여 브랜드 상징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이 매우 중요한 일로 손꼽히나 화장품 용기로 인해 배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해 제품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및 재사용 용이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행보를 통해 정책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 대형 화장품 브랜드사부터 화장품 산업의 가치사슬에 속한 화장품 제조 및 개발, 생산기업, 부자재 생산기업, 원료 생산기업은 글로벌 규제 및 지침으로 도입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관련 규제 검토 뿐 아니라 관련 규제들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단기간 내 대응은 난항이 예상되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 있어 타격이 높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 내재화가 필수적인 것은 분명하다.

## 화장품 산업이 주목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이슈

화장품 산업이 주목해야 할 항목은 무엇일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화장품 산업계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면 6가지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중요한 기후대응 활동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제품 생산 및 유통,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온실가스는 환경파괴의 결과를 초래하여 화장품산업의 제품의 품질과 생산비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기업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화장품 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환경 보호, 기업의 지속 가능성, 소비자 신뢰 확보, 법규 준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과제를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 조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원료 조달, 부자재 생산, 완제품 제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공급망의 탄소 감축을 위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 둘째. 지속가능한 패키징

화장품이 속한 소비재 산업은 제품 수명주기가 짧고,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트렌드가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제품 포장에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을 적용함에 따라 지출의 상당부분을 제품 패키징에 사용한다. 동시에 화장품 산업은 대형 제조사 및 유통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포장재의 친환경성에 대한 고려를 요구 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폐기물은 외부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포장의 지속가능한 성과는 패키징에 사용하는 종류, 소비자의 사용 및 최종 폐기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재료의 종류, 재료의 재활용 함량 및 재활용 가능 재료의 사용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 영향 완화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 분해되는 소재를 활용한 패키 등을 통해 자원순환 구축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 셋째. 제품 안전

화장품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활용하는 제품으로, 타 산업군 보다 제품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민감한 산업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성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 화장품 산업이 주목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이슈

### 넷째. 지속가능한 조달

화장품 산업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천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 인공 첨가물이나 합성 화학물질 대신 천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선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팜유의 화학적 특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게 중요한 원료의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기에 널리 쓰이고 있다.

다만, 천연 원재료를 수확 및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 파괴 그리고 노동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슈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을 이행하지 못할 시 평판 리스크를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은 평판 뿐 아니라 공급 중단, 원료 가격 상승, 사회 환경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를 조달하는 공급망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직접적인 규제 대응을 위해 지금 이 원재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우리 기업까지 온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다섯째. 수자원관리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료 및 부자재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 화학물질 처리에 있어 기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수자원은 화장품 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 투입물이며, 제조과정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필수적 자원이다. 이에, 수자원 관리계획이 미미하다면 비용 증가, 생산 차질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속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업은 체계적 점검과 더불어 수자원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화장품 산업이 준비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 여섯째. 화학물질관리

지속적인 국내외 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적 물질의 위해성을 관리해야 하며, 미판매 및 재고제품을 처리 시 생태계 오염 가능성을 고려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부자재 제조, 제품 생산단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관리가 중요하다. 화학물질은 위험성이 높은 물질 일수록 더욱 엄격한 절차를 통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무엇보다도 화학물질 사용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화학물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기업은 나의 기업 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중요성을 내재화하여 체계적인 규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화장품 협회는 화장품 산업의 가치사슬별 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6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2024년 11월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 딜로이트 ESG 전문팀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연경흠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그룹

Tel: 02 6676 1949  
Email: kyeon@deloitte.com



## 허규만 파트너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그룹

Tel: 02 6676 1454  
Email: kyhuh@deloitte.com



## Nicola Weir 파트너

공공 및 금융 ESG |  
ESG센터

Tel: 02 6676 3178  
Email: nweir@deloitte.com



## 김병삼 파트너

ESG 공시, 공공 및 금융 |  
ESG 통합서비스그룹

Tel: 02 6099 4277  
Email: byungsakim@deloitte.com



##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Tel: 02 6676 2163  
Email: taehpark@deloitte.com



##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그룹

Tel: 02 6676 3096  
Email: junyoo@deloitte.com



## 이옥수 파트너

ESG 전략, 공시 및 금융 |  
ESG 통합서비스그룹

Tel: 02 6099 4425  
Email: okslee@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h@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정수정 Consultant

soojechung@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